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 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 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위반 행정처분의 기준
- 3.자동차 안전운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민지
	담당부서 (과)	자율주행정책과		직급	행정서기
	국장	김홍목		연락처	044-201-3934
	과장	임월시		이메일	jijongkr@mail.g o.kr

2025. 02. 1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2.규제조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17, 제40조의19, 제40조의21제1항·제4항, 별지 제24의6 서식								
	3.위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2.21~2025.04.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24.2.13. 개정, ’ 25.8.14.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인증 대상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대상 및 절차 등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자동차 제작자 등</td><td>다수</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9.규제목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적용대상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사이버안전성 확보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정성분석 *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그 파급효과의 형태와 규모가 다양할 수 있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과 편익의 계량이 어려워 정성분석으로 대체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0조의1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 라 한다)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u> <u>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조립한 부분이 인증받은 자동차의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u> <u>2. 피견인자동차를 이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하는 자동차의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u> <u>3.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u> <u>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u> <u>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u> <u>제40조의1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u>

현행	개정안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2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6서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심사구분	[]최초심사	[]경신심사	[]변경심사
	최초 제작일자			
	인증범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안내사항	1. 변경심사의 경우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예비점검

인증기관

→

수수료 납부

신청인

→

인증심사

인증기관

→

인증서발급

인증기관

210mm×297mm[(백색)(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차량 관련 해킹위험 연평균 99.2% 증가*(Upstream, GLOBAL AUTOMOTIVE CYBERSECURITY REPORT)
 - * 19년 24개, '20년 33개, '21년 139개, '22년 151개, '23년 378개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4.2.13. 개정, '25.8.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제도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인증 대상 자동차 관련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규제대안1	인증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장
규제대안2	인증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최소화

- 인증 대상 자동차 관련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자동차 사이버보안 강화	자동차제작자 부담 증가 및 불필요한 인증 비용 발생
규제대안2	자동차제작자 부담 경감	자동차 사이버위협 대비 미흡

- 사이버보안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방차 등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제작규모가 작아 제도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선택

- 한편 단순한 상호 변경, 관련 조직의 변경, 인증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인증을 요구하는 대안의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과 같이 특정한 경우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 선택
- 인증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인증 취득 및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긴 경우 최신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3년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자동차 제작자등	이해관계자회의 (‘24.4월 1회, 5월 2회)	국제기준(UN R155)와 동일하게 기준 등 적용 필요	→(수용) 국제기준(UN R155)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기준, 인증대상, 재인증 주기(3년), 절차 등을 반영

3. 규제목표

-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대상 자동차, 변경인증의 예외,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기준(UN R155)을 조화하여 자동차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수준 확보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책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항목으로 해당규제는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국제기준(UN R155)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WP.29는 '20년 6월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제기준인 UN R155를 발간하였음
 - EU,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로 국제기준(UN R155)을 채택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 중
 -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 R155) 채택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 중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UN R155	일치	

○ 타법사례

-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인증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고 국제기준 및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예외를 설정한 규정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객관적이고 명확한 대상 규정을 통해 행정적 불확실성이 감소되며, 국제기준과 조화되어 자기인증의 전제조건으로서 운영될 예정이므로 집행 가능성 및 용이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인증심사 등을 위해 인증신청 제작사에게 국제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4.2)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24.3~)

2. 향후 평가계획

- 자동차제조사등의 사이버보안 관리 현황 및 해외 주요국들의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적용대상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사이버 안전성 확보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위반 행정처분의 기준								
	2.규제조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3, 별표5의10								
	3.위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11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2.21~2025.04.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 (‘24.2.13. 개정, ’ 25.8.14.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의 인증의 취소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자동차 제작자 등</td><td>다수</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9.규제목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적용대상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사이버안전성 확보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정성분석 * 행정처분 강도의 차이에 따른 규범 준수 가능성 등을 수치화하기 어렵고, 인증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의 양태와 규모 또한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워 정성분석으로 대체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하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5의10과 같다. 별표5의1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10]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의2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와 관련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 반 행 위</th><th rowspan="2">근거법령</th><th colspan="3">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td><td>법 제 30조의11제1항 제1호</td><td colspan="3" rowspan="2">인증취소</td></tr><tr><td>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td><td>법 제 30조의11제1항제2호</td></tr><tr><td>다.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30조의11제1항제3호</td><td></td><td></td><td></td></tr><tr><td>1)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td><td></td><td>효력정지 1개월</td><td>효력정지 3개월</td><td>인증취소</td></tr><tr><td>2) 신고 대상인 변경인증 사항을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td><td></td><td>경고</td><td>효력정지 10일</td><td>효력정지 1개월</td></tr><tr><td>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td><td>법 제30조의11제1항 제4호</td><td>효력정지 2개월</td><td>효력정지 4개월</td><td>인증취소</td></tr><tr><td>마. 법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td><td>법 제30조의11제1항 제5호</td><td>효력정지 2개월</td><td>효력정지 4개월</td><td>인증취소</td></tr></table>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 30조의11제1항 제1호	인증취소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 30조의11제1항제2호	다.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의11제1항제3호				1)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신고 대상인 변경인증 사항을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경고	효력정지 10일	효력정지 1개월	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11제1항 제4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의11제1항 제5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 30조의11제1항 제1호	인증취소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 30조의11제1항제2호																																								
다.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의11제1항제3호																																								
1)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신고 대상인 변경인증 사항을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경고	효력정지 10일	효력정지 1개월																																					
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11제1항 제4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의11제1항 제5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자동차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세부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인증 제도의 취지 몰각 방지를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효력정지 중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인증 취소 외의 다른 처분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움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인증의 효력 정지가 야기할 수 있는 영업상 손해 규모와 인증제도의 취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처분의 기준 설정
 - 행정처분이 과중해짐에 따라 규제 준수 동기가 커짐과 동시에 위반사항에 대한 은폐 동기 또한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고의 여부, 위반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자동차 제작자등	이해관계자회의 (‘24.4월 1회, 5월 2회)	변경인증이나 경미한 변경신고가 고의성 없이 누락된 경우에도 효력	→(수용) 경미한 변경 신고 등에 적용한 효력 정지 기간

		정지가 적용될수 있어 처벌기간 완화	일부 완화
--	--	---------------------------	-------

3. 규제목표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련 의무 위반 시의 인증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인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자동차 및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판매 전 자기인증을 요구하는 현행 법제의 취지와 사이버 안전 확보라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인증의 부정 취득 또는 인증 위반의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수단은 타당하다고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당 규제는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0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 취득, 법령 위반, 사후관리 거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취소하도록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은 자동차 자기인증의 전제조건으로서 운영되어 자동차 판매와 직결되며,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행정적 불확실성이 감소되며, 기존 자동차 자기인증 제도와 연동되어 자기인증의 전제조건으로서 운영될 예정이므로 집행가능성 및 용이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인증심사 등을 위해 인증신청 제작사에게 국제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4.2)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24.3~)

2. 향후 평가계획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위협 현황, 해외 주요국들의 최신 제도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세부기준을 명확화 하여 자동차의 사이버 안전성 확보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동차 안전운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규제조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12, 제56조의16, 제56조의17								
	3.위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업데이트), 제34조의6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2.21~2025.04.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 (‘24.2.13. 개정, ’ 25.8.14.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자료제출 대상 등의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사전 자료제출의무 대상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 적정성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및 시정조치 관련 의무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자동차 제작자 등</td><td>다수</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자동차 제작자 등	다수								
9.규제목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운행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대상을 지정하고 적정성 조사 및 시정조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정성분석 * 자동차 기술의 발전 및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기기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횟수 및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여 계량화하기 어렵고,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미비에 따른 피해의 정형화 및 수치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성분석으로 대체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기존 자기인증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특례를 받은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56조의16(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현행	개정안
	<u>한다)를 할 수 있다.</u> <u>1.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생략)</u> <u>③ (생략)</u> <u>④ (생략)</u> <u>⑤ (생략)</u> <u>⑥ (생략)</u> <u>제56조의17(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1.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중 미준수 내용 및 원인</u> <u>2.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방안</u> <u>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u>

현행	개정안
	5.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들은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의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성 및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
-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의 등장에 따라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향상, 정비, 기능개선, 신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짐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4.2.13. 개정, '25.8.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제출자료 및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자동차관리법의 취지*, 이미 시행 중인 자기인증 제도의 내용 등을 고려 시, 자료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소프트웨어를 자기인증 시험 결과 등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
- 현행 규정*상 제작 결함의 시정 등을 위한 조사 제도가 존재하며 그 취지와 주체, 대상, 관련 조치 등의 내용이 유사함을 고려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한 적정성 조사, 시정명령, 조치내용의 상세사항을 규정한 이번 개정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
-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결함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자동차 제작자등	이해관계자회의 (‘24.4월 1회, 5월 2회)	국제기준(UN R156)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	→(수용) 국제기준(UN R156)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조치 대상등을 그대로 적용

3. 규제목표

-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범위 및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는 안전운행과 관련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하여 사전 제출 자료,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기준(UN R156)을 조화하여 안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전제출 자료 및 적정성 조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정책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해당규제는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국제기준(UN R156)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WP.29는 '20년 6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국제기준인 UN R156를 발간하였음
- EU,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로 국제기준(UN R156)을 채택하여 '24년 7월부터 시행 중
-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국제기준(UN R156) 채택하여 '24년 1월부터 시행 중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UN R156	일치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제기준 조화 및 제작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규정으로, 준수사항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객관적이고 명확한 대상 규정을 통해 행정적 불확실성이 감소되며, 제작사들이 해외에서 준수하고 있는 국제기준(UN R156)을 조화한 내용으로 집행 가능성 및 용이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전 제출자료 및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정적 부담 없이 제도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의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적정성 조사 등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업데이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4.2)
- 사전 자료제출의무 부과 대상, 적정성 조사 및 시정명령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24.3~)

2. 향후 평가계획

-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현황 및 해외 주요국들의 제도 현황 등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운행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대상을 지정하고 적정성 조사 및 시정조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